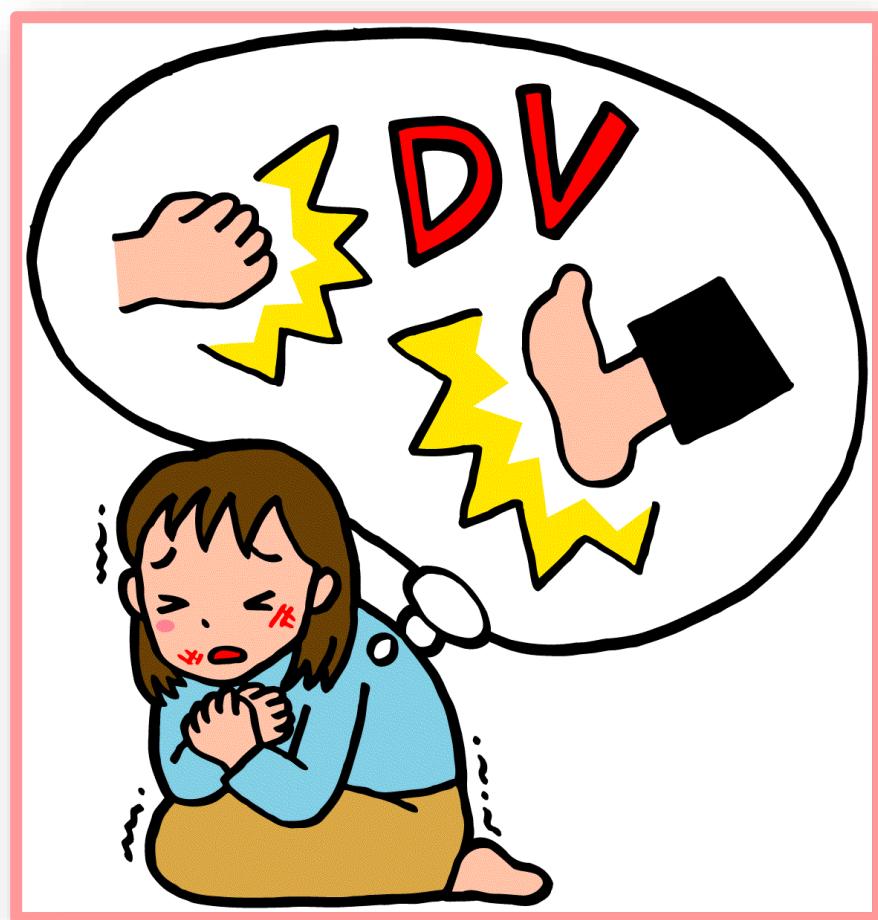


배우자 등의 폭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에게



치바현경찰

～경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～

피해신고를 하고

배우자등의폭력등은피해신고서를
제출함으로써배우자등의신병을
구속하는등형사사건으로취급할수
있습니다

어딘가로 도망가고

배우자등의폭력을피하기위하여일시
피난장소(셀터등)에입소하는것을도
와주거나자립지원을하는기관에인계
합니다.

폭력을 휘두르지 않도록

경찰이 배우자 등에게

당신이“앞으로폭력을휘두르지않도
록배우자등에게경고를해달라”고
요망하면경찰에서배우자등에대하여
지도 경고를 합니다.

당신의신청이타당하다고인정되면
행방불명자신고를수리하지않도록
할수있습니다.

○배우자등이가까이에다가오는것을

방지하는 보호명령제도

○가정폭력피해자를지원해주는관계
기관등이있습니다.

재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

자신이 처해 있는 위험한 상황을 쉽게 생각하지

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피난하지 않고 피해신고서 제출을 주저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.

- 이 정도 폭력이면 참을 수 있다
 - 늘 일어나는 일이라 괜찮다
 - 술을 안 마셨을 때는 좋은 사람이니까
 - 나만 참으면...
- 등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.

※ 폭력적인 성격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.

안전을 최우선으로, 미리미리 대책을 세운다

한번 폭력을 당하면 폭력은 심해지기 때문에 신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건화나 일시 피난(셀터나 상대방이 모르는 친족 집 등) 등 대책을 일찍 세우도록 합시다.

친족 및 친구에게도 도움을 구한다

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당신을 가장 걱정해 주는 친족 및 친구에게도 도움을 청해 둡시다.

당신이 해야 할 일

- 피해신고서 제출에 대비하여 폭력을 당한 일시, 장소, 상황 등의 기록 및 진단서를 보관해 둡시다.
- 생명, 신체에 대한 협박도 보호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록화(문자, 이메일, 편지 등은 보존)해 둡시다.
- 스토퍼 규제법에 의한 조치에 대비하여 전화, 문자, 이메일의 내용 및 수신내역을 보존하는 등 스토퍼 상황을 기록해 둡시다.

보호명령제도

보호명령이란

배우자 등으로부터 폭력 및 생명 등에 대한 협박을 당하고 더 나아가 폭력으로 인하여 그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 신청에 따라 재판소가 내리는 명령

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곳

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주소 및 거처, 폭력 또는 협박이 행해진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

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폭력

- 배우자 등의 신체에 대한 폭력
- 생명 등에 대한 협박

보호명령의 종류

- 퇴거명령(有効期間:原則2か月間、最大6か月間)
 - 배우자 등에 대하여 동거하는 주거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하는 것
- 접근금지명령(유효기간 1개월간)
 - 당신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

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의 벌칙이 있습니다.

メモ欄